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2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128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제 1 심 판 결	[redacted]법원 2020. 9. 24. 선고 2018구합102873 판결
변 론 종 결	2021. 7. 22.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6.[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7. 7. 7."은 갑 제5호증 처분서의 기재에 비추어 "2017. 7. 6."로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2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 "조성사업"을 "개발사업"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사이에" 다음에 "이 사건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로 그 용도가 지정된"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공장용지"를 "토지"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 "2018. 11. 기준 약 87%"를 "2020. 4. 기준 약 94%"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 "거쳐" 다음에 "폐기물처리장의 사업시행자를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서 원고로 변경 지정하였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 "체결하였고," 다음에 "주식회사 K는"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9) 원고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적정 통보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1. 2. 4. 대전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입주계약 승인 조건 및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단서에 반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이어서 무효이다'라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2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적정 통보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7행 "원고가" 다음에 "폐기물처리장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5행 "반대하였다." 다음에 "그리고 그 이전에 피고는 원고에게 입주계약 확인 통보를 하면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 및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조건을 부과하였고 [redacted]도지사는 원고에게 제2차 실시계획변경신청 승인처분을 하면서 '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민원발생 부분은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6행 "2018. 11."을 "2020. 4."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6행 "87%"를 "94%"로 바꾸고, 각주 2)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0행 "취소하자"부터 같은 면 제15행 "보인다."까지를 "취소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취소처분은 관련 취소소송에서 영업구역 제한에 관한 승인 조건의 무효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고, 오히려 원고는 입주계약 단계에서부터 계속하여 이러한 피고와 [redacted]도지사의 부당한 영업구역 제한 조건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마련 및 추진에 있어서 지장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2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d판결문은d판결서d인터넷열람d사이트에서d열람d출력되었습니다r
영리목적으로d이용하거나d무단d배포를d금합니다r게시일자d:d2020q0dq0q02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단위: 원)

과세물건		취득세	지방교육세
[redacted] 토지 59,714.4m²	본세	378,020,920 원	37,802,090 원
	일반무신고가산세	75,604,180 원	3,780,200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9,538,290 원	5,953,820 원
합계		**513,163,390 원**	**47,536,110 원**